

##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3.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1. 4. 17
- 다. 상정일자 : 2001. 4. 17
  - (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 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 나. 제정사유
  - 농공단지 분양촉진을 위해 부지 분양대금을 15%보조하여 조기 분양하고 융자금을 조기 상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농공단지 부지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다 (제3조)
  - 보조금의 지급 조건은 부지분양대금 전액을 일시 납부 할 경우에 한함 (제5조)
  - 보조금의 범위를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내로 한다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농조례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업 매치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제1호부터 제4호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하는바 다음 각호의 1에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검토보고 됨.

####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효지 : “생략”

6. 심사결과 :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 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기 화순군 농공단지 부지분양 촉진을 위하여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용도)보조금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부지분양대금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보조금의 재원)①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재원을 선입받는다. 다만, 농공단지 부지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②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지원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신청)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분양대금 상환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급)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는 부지 분양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를 조건으로 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용자금 상환대금 계좌에 대체입금 시킬 수 있다.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보조금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보조금의 지급대상)농공단지 입주시 부지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한 업체는 분양대금 총액의 15%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3.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4. 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

제9조 (준용규정)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